

大韓建築士協會定款

1965年10月23日 創立總會制定
1966年 9月24日 第1回定期總會一次改正
1967年 1月29日 第1回臨時總會二次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建築士法에 依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韓建築士協會(以下本會라 한다)라 부른다

第2條 本協會는 事務所 開設登錄을 마친者로서 組織한다

第3條 本協會는 建築士의 品位保全, 相互親睦 및 權益擁護와 建築士業務의 健全한 發展을 通하여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꾀하고 아울러 國家의 建設施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協會의 主事務所 및 各支部의 事務所는 다음地에 둔다

主事務所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三三番地壹

支部事務所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三三番地壹

釜山直轄市中區新昌洞一街八番地壹
濟州市三徒二洞參九番地貳

春川市朝陽洞九貳番地

大邱市中區東門洞拾四番地

光州市不老洞壹貳番地

大田市大興洞四八拾番地

仁川市京洞貳參九番地

清州市南門路二街參七番地貳

全州市慶園洞一街壹貳八番地壹

馬山市中央洞一街五番地

第5條 本協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

1. 建築 및 建築士業務에 關한 研究, 調査, 統計, 鑑定, 證明 및 宣傳
2. 建築士業務報酬基準에 對한 策定
3. 會員의 業務에 關하여 發生하는 紛爭에 對한 調停
4. 建築에 關한 敎養, 作品發表 및 資材展示
5. 建築에 關한 國際機構에의 參與와 國際交流
6. 會員의 厚生 및 共濟
7. 本協會의 機關紙刊行 및 出版
8. 地方的으로 必要不可缺한 支部事業에 對한 補助
9. 其他 第6條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6條 本協會는 이 定款으로 定하는 外에 組織과

業務運營上 必要한 事項을 規程으로 이를 定할 수 있다

第2章 會 員

第7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會員을 둔다

1. 正會員
2. 推戴會員
3. 名譽會員
4. 贊助會員

第8條 ①正會員은 建築士事務所開設者로 한다 새로 正會員이 된 사람은 本協會所定의 入會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②推戴會員은 本協會에 功勞가 많은 正會員으로서 總會에서 推戴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名譽會員은 著名한 外國建築士로서 理事會에서 推戴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贊助會員은 本協會의 事業目的을 贊同하는 個人 또는 法人으로 한다

第9條 ①本協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1. 發議 및 議決權
2. 選舉 및 被選舉權

②會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써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第10條 ①本協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진다

1. 定款 및 諸規程의 遵守
2. 倫理規約의 遵守
3. 各種會費의 納付

②推戴會員이 된 正會員에게는 正會員費를 免除한다

第11條 ①正會員이 本協會의 定款 및 倫理規約을 違反하였을 때는 本會의 倫理委員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其情狀에 따라 다음의 徵戒를 한다

1. 勸告
2. 譴責
3. 資格停止
4. 除名

②倫理規約 및 倫理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③正會員이 納付하는 正會員의 會費를 未納하였을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支部長의 意見을 들어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과 같이 處理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전직
2.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 정지
3. 1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제명

第12條 正會員이 建築士法令 本協會의 定款 및 諸規程의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 또는 資格停止의 處分을 받았을 때는 其停止期間中 本協會의 會員으로서의 權利가 停止된다

②前項에 該當하는 會員이 本協會의 任員 또는 代議員일 때는 其處分을 받은 날부터 其職責이 解任된다

第13條 正會員이 建築免許取消處分을 받거나 또는 免許가 消滅되었을 때에는 本協會에서 除名된다

第 3 章 任 員

第14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總務理事 1名(理事中에서 互選한다)
3. 理 事 4名
4. 監 事 2名

第15條 ①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總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는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理事會를 組織하며 本協會의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④監事는 本協會의 業務 및 會計事務를 監査하여 이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16條 會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7條 ①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②任員中 理事 3名 및 監事 1名의 任期는 初회에 限하여 1年으로 한다

③任員中 缺員이 생긴 경우는 30日以內에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8條 任員中 會長 및 理事의 就任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9條 ①本協會에 顧問若干名을 두되 國內의 著名한 人士中에서 理事會가 이를 推戴한다.

②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4 章 會 議

第20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會議을 둔다.

①總 會

③理事會

③委員會

第21條 ①總會를 區分하여 定期 및 臨時的 2種으로 한다

②總會는 代議員으로써 이를 構成한다

③代議員은 各支部 正會員中에서 選出하되 正會員 每5名當 1名式의 比率로 이를 選出하며 그 端數와 正會員數가 5名 未滿일 때는 이를 5名으로 看做하여 選出한다

④定期總會는 每年 9月中에 召集한다.

⑤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召集한다.

1.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2. 代議員總數의 3分の1 以上이 會議目的을 提示하고 召集의 要求가 있을때
3. 正會員總數 3分の1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때
4.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때

第22條 ①總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總會의 召集은 最少限 10日前에 總會의 目的事項日時, 場所等을 表示한 文書로서 會員에게 通知함과 同時에 서울特別市內에서 發刊하는 日刊新聞에 公告한다

第23條 總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改正
2. 任員改選
3. 事業報告書,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
4.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
5. 基本財産의 設置 및 處分
6.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7. 其他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4條 ①總會는 代議員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代議員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贊反同數인 경우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③總會에서 出席代議員過半數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議決할 수 있다

第25條 ①理事會는 會長 및 理事로서 組織하고 必要에 따라 每月 1個以上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理事會는 總會의 委任事項 및 會務執行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③理事會는 會長 및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 出席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贊反同數일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③監事 및 支部長은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6條 ①本協會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 企劃委員會
2. 倫理委員會
3. 編纂委員會
4. 指導委員會
5. 研究委員會
6. 其他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委員會

第27條 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 委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會가 이를 選任한다

- ②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 ③委員會의 成員 및 議決方法은 別途 規程이 없는 限 理事會에 關한 節次에 따른다.
- ④各種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 5 章 事務機構

第28條 ①本協會에 事務處를 두고 處長 1名과 若干名의 職員을 둔다

- ②處長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 ③處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 處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29條 ①事務處에는 다음의 部署를 둔다

1. 總協部
2. 指揮部
3. 出版部
4. 事業部

②部에는 部長 및 職員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30條 ①會長, 理事, 監事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處長 및 其他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理事會에서 議決한다

②任員 및 委員이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費用이 所要될 때에는 其實費를 支給하고 辦公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6 章 財産 및 會計

第31條 本協會의 財政은 入會費, 正會員會費, 贊助會費 및 事業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入會費...正會員이 되었을때 納付하는 入會金
2. 正會員의 會費...正會員이 納付하는 月定會費 및 業務實績에 따라 別途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付하는 會費
3. 贊助會費...贊助會員이 納付하는 會費
4. 事業收入金...本會의 事業에 따르는 收入金

第32條 ①本協會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9月 1일에 始作하여 다음해 8月 31일에 磨勘한다

②本協會에는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第33條 會長은 每年 9月 10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7 章 支 部

第34條 支部는 다음 各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

1. 建築 및 建築土業務에 關한 研究 調査 統計, 鑑定, 證明 및 宣傳
2. 建築에 關한 會員의 敎養 및 作品發表
3. 協會本部에서 委任받은 事項
4.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業

第35條 支部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支部長 1名
2. 幹事 서울特別市 9名以內 釜山市 5名以內 其他3名以內
3. 監事 2名
4. 代議員 代議員數는 第21條(3)項에 規定한바에 따른다
5. 分所長 分所當 1名

第36條 ①支部長은 支部를 代表하며 支部會務를 統理하고 支部總會 및 幹事會의 議長이 된다 支部長 有故時는 支部長이 指名한 幹事가 이를 代行한다.

②幹事會는 幹事로서 組織하며 支部의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③監事는 支部의 業務와 會計事務를 監査하여 이를 支部總會에 報告한다

監事 및 分所長은 幹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7條 支部長, 幹事, 監事, 代議員 및 分所長은 支部總會에서 選出한다

第38條 ①支部長 幹事 및 分所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②監事 및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한다

③任員의 補選과 그 任期는 第17條3項에 規定한바에 따른다

第39條 支部가 分所를 設置코져 할때에는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40條 支部에는 다음에 會議를 둔다

1. 總會
2. 幹事會
3. 委員會

第41條 ①總會는 定期 및 臨時的 2種으로한다

②總會는 支部所屬正會員으로 이를 構成한다

③定期總會는 每年 10月中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

는 다음의 경우에 召集한다.

1.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支部所屬正會員總數 3分の1 以上の 召集請求가 있을 때
3. 監事の 召集要求가 있을 때

第42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改選
2. 事業報告書,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
3.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
4. 基本財産의 設置 및 處分
5.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6. 其他 幹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43條 總會의 召集者 成員 및 議決에 關한 事項等은 協會總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

第44條 幹事會는 支部長 및 幹事로 組織하며 召集成員 및 議決에 關한 事項等은 理事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

第45條 支部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 指導委員會
2.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委員會

第46條 委員會 規程은 協會의 委員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

第47條 ①支部에 事務所를 두고 事務長 1名과 若干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

②事務長은 幹事會의 議決로서 支部長이 이를 任命한다

③事務長은 支部長의 命을 받아 支部의 會務를 處理하여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48條 ①事務所에는 다음의 部署를 둘 수 있다

1. 總務
2. 指導
3. 事業

②各部署의 職員은 幹事會의 議決을 받아 支部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49條 ①支部長, 幹事, 監事, 代議員, 分所長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長 및 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幹事會의 議決을 얻어 支部長이 이를 定한다

②任員 및 委員이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費用이 들 때에는 그 實費를 支給한다

第50條 支部가 總會를 가졌을 때는 10日以內에 다음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1. 創立總會의 境遇

一, 會員名單(姓名, 住所, 級別, 事務所所在地 等 包含)

二, 任員의 名單 및 履歷書

三,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

四, 總會 會議錄

2. 定期總會의 境遇

一, 會員名單

二, 改選된 任員名單 및 履歷書

三, 事業報告書 및 收支決算書

四,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

五, 總會 會議錄

3. 臨時總會의 境遇

一, 議決된 事項

二, 總會 會議錄

第51條 支部가 總會에서 承認된 事業計劃以外에 事業을 遂行코자 할 때는 그 事業의 實施 10日前에 다음의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1. 事業種目

2.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

第52條 ①支部는 每月 10日까지 會務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協會에 報告한다

1. 前月の 一般會務報告書

2. 前月の 事業報告書 및 會計報告書

3. 그달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

②月例報告外에 特殊事項 또는 突發事項이 있을 때에는 即時 協會에 報告한다

第53條 支部는 一般會務 및 會計에 關하여 協會의 監査를 年1回以上 받는다

第54條 ①支部의 財政은 支部에서 收入되는 正會員會費, 贊助金 및 事業收入金中 支部에 配定된 金額 및 協會의 補助金 등으로 充當한다

②支部에 配定되는 金額 및 補助金은 協會의 定期總會에서 定한다

第55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0月 1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9月 30日로 마감한다

第56條 支部長은 每年 10月 10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 總會에 提出한다.

附 則

創立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第2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